의 안 번 호		제	ই
의	결	20 .	
연 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〇〇〇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0조에 따라 해당 공인중 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다수의 공인중개사는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으나, 공제금 청구 시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의 피해 회복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, 60일 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조정의 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한 거래당사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 전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6호) 중 "제5호"를 "제6 호"로 한다.

5.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거래당 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(거래당사자가 「공인중개사 법」제42조에 따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조정위원회의 심의・조정	제9조(조정위원회의 심의・조정
사항)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	사항)
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	
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"이란 다	
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5.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0조에
	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
	약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
	상책임에 관한 분쟁(거래당사
	자가 「공인중개사법」제42조
	에 따른 공제에서 공제금을
	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
	<u>한다)</u>
5. (생략)	<u>6</u> . (현행 제5호와 같음)
<u>6</u> .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5호</u>	<u>7</u> <u>제6호</u>
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	
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(이하	
"위원장"이라 한다)이 조정이	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

연 락 처

 $(044) \ 201 - 3455$